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5104호

시행일자 2019. 7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 일부개정 통보

1. 관련근거
 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833호(2019. 7. 29)
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1호(2019. 7. 30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을 개정하여 알려온 바, 동 고시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 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/지침(최근 제·개정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□ 개정 주요내용
○ 총 8항목 : 신설 1항목, 변경 6항목, 삭제 1항목
< 신설 1항목 >
-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'갈색세포종'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(디벤지란캡슐) 급여 인정
< 변경 6항목 >
- 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인 '엑스원알정5/80/5밀리그램 등 4품목'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,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
-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(레볼레이드정)에 추가된 적응증인 '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'에 급여 인정
- '청소년'에서 '소아'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Ledipasvir + Sofosbuvir 경구제(하보니정)에 고시 문구 변경

(대의협 제813-5104호) 시행일자 2019. 7. 30

- 「자가통증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 급여기준」이 확대 예정(‘19.8.1.시행)임에 따라, Fentanyl citrate 주사제(구연산펜타닐주 등)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'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'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등

< 삭제 1항목 >

-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(에소메졸캡슐)를 「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」 고시에 통합하여 급여 인정하고, 동 개별고시를 삭제

□ 시행일자 : ‘19. 8. 1.(목)
‘19. 8. 5.(월) * 변경되는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1품목에 한함

붙임: 복지부 공문, 고시 개정안, 변경대비표, 신설 급여기준, 변경 급여기준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